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1. 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0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0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가. 개정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장기간 미조정하고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규·조례 등과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와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 장기간 미조정하고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수수료 현실화 추진(요액인상)
 - 인감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28개 종목
 - 상위법규 및 관련조항이 개·폐지되었거나 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금액이 법에 직접 규정된 종목과 관련법이 없고 발급신청이 없어 사문화된 수수료 종목 삭제
 - 세목별 납세증명, 공부의 등본·초본·하부원본 등 67개 종목
 - 법규 개정 및 행정여건 변동 등으로 종목변경(통합) 신설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종목 변경 또는 신설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 한국영화연간상영일수감경신청 등 18개 종목
- 2) 공중위생법 폐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는 등 조례 별표중 위생처리업 등의 종목에 대하여 위 수수료조례에 신설 등재(일부종목 현실화 및 명칭 변경)
 -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등 15개 종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동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의 요율이 1990년 3월 28일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여 장기간동안 조정되지 않아 행정서비스의 공급원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사문화된 수수료의 종목은 삭제하고 수수료의 종목 변경 또는 명칭 변경이나 신설이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 등 35개 종목은 요율을 인상조정하고, “유원시설업” 등 4개 종목은 인하조정하며, “세목별 납세증명” 등 95개 종목은 폐지·삭제, “지방세 완납증명” 등 13개 종목은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영화 연간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등 9개 종목을 신설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

제출일자 : 2000. 10. 1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장기간 미조정하고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규·조례 등과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와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 장기간 미조정하고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수수료 현실화 추진(요액인상)
 - 인감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28개 종목
 - 상위법규 및 관련조항이 개·폐지되었거나 법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금액이 법에 직접 규정된 종목과 관련법이 없고 발급신청이 없어 사문화된 수수료 종목 삭제
 - 세목별 납세증명, 공부의 등본·초본·하부원본 등 67개 종목
 - 법규 개정 및 행정여건 변동 등으로 종목변경(통합) 신설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종목 변경 또는 신설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신청, 한국영화연간상영일수감경신청 등 18개 종목
- 나. 공중위생법 폐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는 등 조례 별표중 위생처리업 등의 종목에 대하여 위 수수료조례에 신설 등재(일부종목 현실화 및 명칭 변경)
-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등 15개 종목

3. 참고사항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28조, 제130조

나. 국민정부 100대 실천과제(수수료·사용료 현실화 부문)

○예산조치 : 해당없음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7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건	500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1건	500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500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1개년	500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 건물 확인원		500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	
(2)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건	500	
(3)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건	1,000	
마.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1건	500	
(2) 무적증명	1건	500	
(3) 거주에 관한 증명	1건	500	
(4)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1매	3,500	
바. 도시계획 및 확인에 관한 증명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에정지 증명	1필지	500	
(2) 경계명시 측량 (도로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	1필지	8,000	
사. 회계관련 증명			
(1)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	1건	1,000	
(2)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 증명	1건	1,000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500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37종)

종 목	단 위	수 수 료 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50,000	
(3)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출판사(인쇄소) 등록 신청	1건	1,000	
(2) 공유재산 대부(계속대부) 신청	1건	1,000	
(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2,000	
(4) 인감(신규·변경·개인) 신고	1건	500	
(5) 입찰참가 신청	1건	5,000	
(6)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7)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1건	2,000	
(8)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법인)	1건	20,000	
(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개인)	1건	8,600	
(1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법인, 개인)	1건	3,000	
(11)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20,000	
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1건	5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30,000	
(4)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20,000	
(6)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2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	
(2)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30,000	
(3)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4)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5) 위생처리업	1건	20,000	
(6) 위생처리업 변경	1건	10,000	
(7) 세척제 제조업	1건	20,000	
(8) 세척제 제조업 변경	1건	10,0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건	20,000	
(10)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건	10,000	
(11) 장난감 제조업	1건	20,000	
(12) 장난감 제조업 변경	1건	10,000	
(13) 위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각 종목별 신규영업 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	1건		
(14) 이·미용업 신규면허	1건	5,000	
(15) 이·미용업 신규면허 재교부 신청	1건	2,000	

3.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생 략” (변 동 없 음)	“생 략” (변동없음)	“생 략” (변동없음)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생 략” (변 동 없 음)	“생 략” (변동없음)	“생 략” (변동없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현행					개정 (안)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5종)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7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감에 관한 증명					가. -----				
(1)인감증명	1건	300			(1)-----	1건	500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나. -----				
(1)세목별 납세증명	1건	350			(1)삭 제				
(2)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유예증명	1건	350			(2)지방세 납세증명서	1건	500		
(3)세목별 과세증명	1건	350			(3)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500		
(4)삭 제					(4)삭 제				
(5)삭 제					(5)삭 제				
(6)삭 제					(6)삭 제				
(7)삭 제					(7)삭 제				
(8)공부의 등본·초본·하부원본(환지에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	1매	350			(8)삭 제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9)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1개년	500		
(1)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	1건	350			다. -----				
(2)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50			(1)삭 제				
(3)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350			(2)삭 제				
라. 삭 제					(3)-----	1건	500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라. 삭 제				
(1)공장등록증명	1건	350			마. -----				
(2)생산실적증명	1건	350			(1)-----	1건	1,000		
(3)실수요자증명	1건	350			(2)삭 제				
(4)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1건	350			(3)삭 제				
(5)원자재(시설재 증명)	1건	350			(4)삭 제				
(6)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1건	350			(5)삭 제				
(7)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건	350			(6)-----	1건	500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7)-----	1건	1,000		
(1)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1건	350			바. -----				
(2)무직증명	1건	350			(1)-----	1건	350		
(3)제적기재 사실증명	1건	350			(2)-----	1건	350		
(4)거주에 관한 증명	1건	350			(3)삭 제	1건	350		
					(4)-----	1건	350		

현행					개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5)부양시설 증명	1건	350			(5)삭 제				
(6)외국인등록표(재교부)신청	1건	350			(6)삭 제				
(7)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1건	3,300			(7)-----	1매	3,500		
사. 도시계획 및 확인에 관한 증명					사. -----				
(1)도시계획 확인원	1필지	750			(1)삭 제				
(2)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1건	350			(2)삭 제				
(3)지적공부정비 완료 증명	1건	350			(3)삭 제				
(4)환지증명 또는 환지에정지 증명	1필지	450			(4)-----	1필지	500		
(5)경계명시 측량(도로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	1필지	5,500			(5)-----	1필지	8,000		
아. 회계관계 증명					아. -----				
(1)물품납품 실적증명	1건	500			(1)삭 제				
(2)공시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	1건	500			(2)삭 제				
자보증금 보관 확인증									
(3)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1건	500			(3)경쟁입찰 참가자격	1건	1,000		
					등록(변경) 신청				
(4)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1건	400			(4)물품 또는 공사·용역	1건	1,000		
					실적 증명				
(5)보증금 지불증명	1건	350			(5)삭 제				
자. 자동차에 관한 증명					자. 삭 제				
(1)자동차 제증명	1건	1,000			(1)-----				
차. 기타 제증명					차. -----				
(1)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1건	350			(1)삭 제	1건	500		
증명									
카. 공부 열람					카. 삭 제				
(1)각종 공부 열람	1건	100			(1)삭 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31종)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37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가. -----				
(1)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	1건	550			(1)삭 제				
(2)도로하천 부지점용(지하도, 지하	1건	600			(2)삭 제				
상가, 노상주차장) 허가									
(3)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			(3)삭 제				
(4)권리변경(재발급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50			(4)삭 제				
(5)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50			(5)삭 제				

현행				개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6)식품환경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50		(6)삭 제			
(7)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50		(7)삭 제			
(8)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1건	550		(8)-----	1건	10,000	
(9)토지 형질변경(택지조성) 행위허가 신청	1건	2,000		(9)삭 제			
(10)공연장설치허가 신청	1건	50,000		(10)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50,000	
(11)공연장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5,000		(11)공연장업 변경 등록신청	1건	25,000	
(12)공연장설치허가 재교부 신청	1건	5,000		(12)삭 제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나. -----			
(1)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1건	550		(1)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1건	1,000	
(2)이·미용 개설 신고증 재교부	1건	550		(2)삭 제			
(3)구·시유재산 대부(계속대부) 신청	1건	950		(3)공유재산 대부(계속대부) 신청	1건	1,000	
(4)구·시유재산 매수 신청	1건	950		(4)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2,000	
(5)시설시장 개설 및 경신 신청	1건	550		(5)삭 제			
(6)시영주택(택지) 양도 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 신청	1건	550		(6)삭 제			
(7)시영주택(중·개축) 승인 신청	1건	550		(7)삭 제			
(8)인감(신규, 변경, 개인) 신고	1건	250		(8)-----	1건	500	
(9)입찰참가 신청	1건	650		(9)-----	1건	5,000	
(10)급수공사 신청	1건	550		(10)삭 제			
(11)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 신청	1건	4,000		(11)삭 제			
(12)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 사항 변경증명	1건	2,000		(12)삭 제			
(13)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		(13)삭 제			
				(14)출판사(인쇄소)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15)한국영화 연간의무상영 일수 감경신청	1건	2,000	
				(16)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법인)	1건	20,000	
				(17)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개인)	1건	8,600	
				(18)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법인, 개인)	1건	3,000	
				(19)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20,000	

현행				개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다. 의료기관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다. -----			
(1)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50,000		(1)-----	1건	100,000	
(2)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1건	30,000		(2)-----	1건	50,000	
(3)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20,000		(3)-----	1건	30,000	
(4)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1건	10,000		(4)-----	1건	20,000	
(5)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5)-----	1건	20,000	
(6)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2,000		(6)-----	1건	20,000	
				(7)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	
				(8)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종합유원시설업	1건	92,280		(1)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60,000	
(2)종합유원시설업 변경	1건	46,140		(2)유원시설업	1건	30,000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 허가사항 변경신청			
(3)기타 유기장업	1건	46,140		(3)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건	30,000	
(4)기타 유기장업 변경	1건	23,070		(4)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15,000	
(5)위생처리업	1건	7,000		(5)위생처리업	1건	20,000	
(6)위생처리업 변경	1건	3,500		(6)위생처리업 변경	1건	10,000	
(7)세척제 제조업	1건	20,000		(7)세척제 제조업	1건	20,000	
(8)세척제 제조업 변경	1건	10,000		(8)세척제 제조업 변경	1건	10,000	
(9)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건	7,000		(9)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건	20,000	
(10)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건	3,500		(10)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건	10,000	
(11)장난감 제조업	1건	7,000		(11)장난감 제조업	1건	20,000	
(12)장난감 제조업 변경	1건	3,500		(12)장난감 제조업 변경	1건	10,000	
(13)위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				(13)위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각 종목별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			
(14)아·미용업 신규면허	1건	3,000		(14)아·미용업 신규면허	1건	5,000	
(15)아·미용업 신규면허 재교부 신청	1건	2,000		(15)아·미용업 신규면허 재교부 신청	1건	2,000	
3.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31종)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삭제)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광고류 허가 및 신고사항				가. 삭제			
(1)입간판 설치허가등	1개소당	3,00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수수료)			
(2)현수막 설치허가	1개소당	5,000					

현행				개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3)프랑카드 설치허가	1개소당	5,000		(수수료납부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납부)			
(4)에드벌룬 설치허가	1개소당	10,000					
(5)돌출광고물 설치허가	3.5㎡ 미만	20,000					
	3.5㎡ 이상	28,000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34조 별표에 직접 규정			
(6)공연광고물 설치허가	허가공연시	5,000					
(7)전주, 가로등주 이용광고물 설치허가(공중전화, 우표, 담배표지판, 소형광고류 포함)	50개 이하	11,000					
(8)차량이용 광고물 설치허가	50개 초과	22,000					
	· 내부좌석상단	11,000					
	50매 기준						
	· 차량 양측면	2,000					
	1개당						
(9)지하도 광고물 설치허가	· 1개당 5㎡ 미만	13,000					
	· 1개당 5㎡ 이상	15,000					
(10)전단	· 공중살포 1회	22,000					
	· 신고1회	3,000					
	(5,000매 기준)						
(11)옥상광고물 허가	· 옥상광고물 신규허가						
※ 옥상광고물(전광네온포함)	-1면 기준 70㎡	320,000					
2면은 2배	이하(가로 10m× 높이 7m 이하)						
4면은 4배	-1면 기준 120㎡	430,000					
	이하(가로 15m× 높이 3m 이하)						
	-1면 기준 150㎡	540,000					
	이하(가로 15m× 높이 10m 이하)						
	-1면 기준 200㎡	720,000					
	이하(가로 20m× 높이 10m 이하)						
	-1면 기준 300㎡	1,080,000					
	이하(가로 20m× 높이 15m 이하)						
	· 옥상 네온(전광) 광고						
	-1면 기준 70㎡						
	이하						
	-1면 기준 120㎡						
	이하						

현행					개정 (안)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1면 기준 150㎡ 이하	1,080,000			(전종목 삭제)				
	-1면 기준 200㎡ 이하	1,440,000							
	-1면 기준 300㎡ 이하	2,160,000							
(12)공공시설이용광고 허가	5개당	1,000							
(13)벽보지류설치 신고	100개당	6,000							
(14)가로간판	3.5㎡ 이상	3,000							
	4층 이상 설치	3,000							
(15)지하철역 광고물	1개당	12,000							
(16)지주이용간판	1개소당	20,000							
(17)이·미용업소 사인광고	1개소당	3,000							
(18)주유소 안내간판(풀싸인)	1개소당	20,000							
(19)형광류 및 네온광고물	1㎡ 이하	5,000							
	1㎡ 초과 3.5㎡까지	10,000							
	5㎡ 초과 10㎡까지	15,000							
	10㎡ 초과	40,000							
나. 입간판(철도역)									
(1)벽면부착(승강장)	1개당	4,000							
(2)입간판(승강장)	"	4,000							
(3)철도연변	"	15,000							
다.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1)시계탑광고	1개소당	30,000							
(2)휴게소 안내탑	"	40,000							
(3)광고안내, 기타	"	20,000							
라. 비행선 광고물									
(1)비행선 광고물	1식	400,000							
마. 국민체육진흥광고물									
(1)환경정화용 대형광고	1개	30,000							
(2)탑 광고	1개	25,000							
(3)전광판 광고	1개	150,000							
(4)시내버스 외부광고	1대	1,500							
(5)택시표시등 광고	10대	2,000							

현행					개정 (안)				
4. 행정정보공개 수수료('98. 10. 8)					3.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생략)					(생략) "변동없음"				

현행					개정 (안)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생략)					(생략) "변동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11. 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10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7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0년 10월 30일 상정의결)